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28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58145 부당이득금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1. ○○○○시 ○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시 ○구청장
변 론 종 결	2023. 6. 15.
판 결 선 고	2023. 7. 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시 ○구청장[1]이 2021. 9. 10. 원고

1) 원고는 2023. 6.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에 '피고 ○○○○시 ○구청'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피고 ○○○○시 ○구청장'의 명백한 오기이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28

에 대하여 한 2020년도 토지분 재산세 1,308,140원, 지방교육세 261,620원 합계 1,569,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21.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도 토지분 재산세 1,388,150원, 지방교육세 277,630원 합계 1,665,78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시 ○구는 원고에게 14,992,020원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에 대하여는 그 순번으로 호칭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는 중로1류(폭 20m부터 25m)(B호선)에 저촉되면서 소하천정비법상 소하천구역(C천)에 해당하고, 이 사건 2, 3토지에 관하여는 중로2류(폭15m부터 20m)(D호선)에 저촉되면서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에 해당한다.

나. 피고 ○○○○시 ○구청장(이하 피고들에 대한 호칭 시 ○○○○시를 생략한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합계 3,752㎡ 중 도로구역 및 소하천구역 합계 219.31㎡를 제외한[2] 나머지 3,532.69㎡에 대하여 2021. 9. 7. 2021년도 토지분 재산세 1,388,150원, 지방교육세[3] 277,630원 합계 1,665,780원을, 2021. 9. 10. 2020년도 토지

2) 도로구역 및 소하천구역 합계 219.31㎡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등에 따라 비과세·감면하였다.

3) **지방세법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28

분 재산세 1,308,140원, 지방교육세 261,620원 합계 1,569,760원(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개별 처분은 귀속 연도로 호칭한다).

다. 원고가 2020. 11. 20. 이 사건 2020년도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게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8. 2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구청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1토지는 비과세된 하천부지 뿐 아니라 나머지 토지도 하천구조물인 석축과 U형 철근 콘크리트 배수로가 설치되어 토지 전체를 원래의 용도인 답으로 이용할 수 없으므로, 토지 전체가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2, 3토지는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에 따라 공익용산지로 지정한 토지일 뿐만 아니라, 토지 전체가 산사태취약지구인 ◯◯◯◯시 ◯구 E 토지(임야)에 3면 이상 포획된 토지로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점유 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은 위와 같이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의 비과세조항에 위반된 처분이므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다. 가사 위와 같은 하자를 무효로 보지 않더라도 이 사건 2020년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피고 ◯구청장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징수해 간 재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28

산세 등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의 비과세조항에 위반되어 무효인 행정처분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 ◯구는 원고에게 그 재산세 등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는 피고 ◯구에 대하여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간 부과한 재산세 등 상당액 14,992,020원(= 2021년도 재산세 등 1,665,780원 × 9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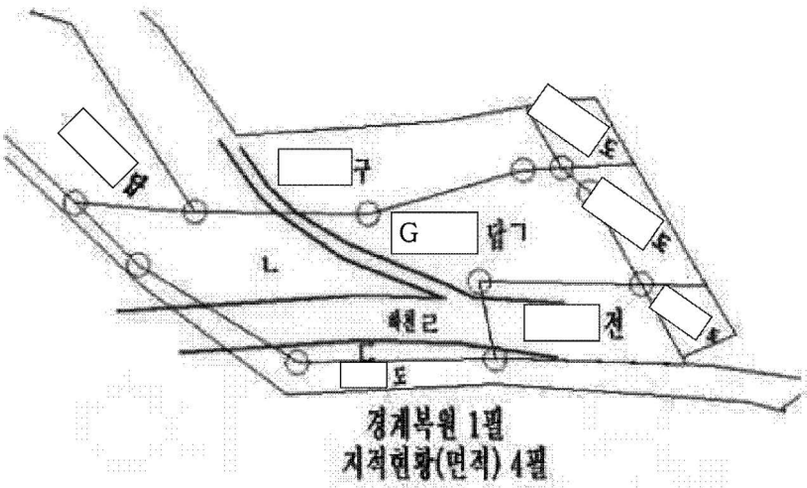
1)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는, 아래 횡단면도 및 측량감정 성과도 영상과 같이 C천이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하천부지 경계로 하천구조물인 석축과 U형 철근 콘크리트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 석축 등으로 인해 토지가 ㄱ, ㄴ, ㄷ, ㄹ의 4개 부분으로 분리되어 전체를 답으로 이용함에 있어 일정한 제약이 있음이 확인된다.

[횡단면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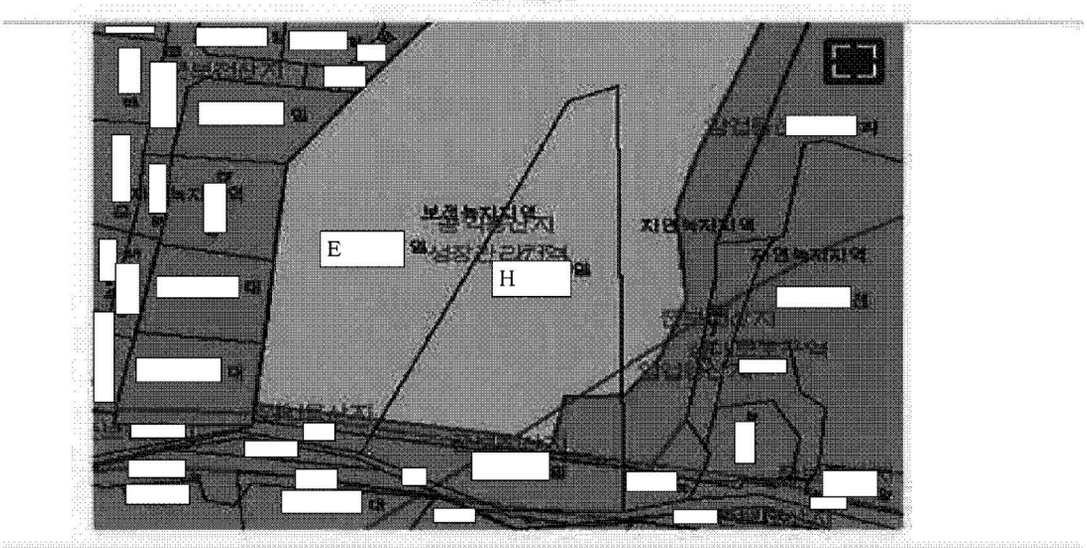
측량감정 성과도 (감정신청서 별첨자료)



도-1. 본 사건관련 측량감정 성과도(지적현황(면적) 4필)의 "ㄷ" 필지에 대하여 시추감정 추가실시

2) 이 사건 2, 3 토지는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 또는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고, 주변으로 아래 도면과 같이 임야 등이 둘러싸고 있어 산지경관 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확인도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2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서 정한 '국가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라는 의미는 문언상 국가 등이 직접 이를 이용하거나 사적 소유권자의 배타적 사용을 배제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그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는 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의 사적 소유권의 대상이 되어 왔을 뿐 국가 등이 직접 이를 이용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용에 제공하여 왔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하천구조물인 석축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1토지 전체가 원래의 용도인 답으로 이용될 수 없으므로 국가 등이 이를 공공용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석축 등으로 원고의 사적 소유권이 위법하게 제한되고 있음을 들어 원고가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을 구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28

로 위 1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의 비과세 요건인 '국가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2, 3토지가 공익용산지 등으로 지정된 점 등을 들어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점유 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익용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원고의 소유권 행사에 일정한 제한이 있거나 산지경관 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역시 위 2, 3토지에 대하여 '국가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 ◯구청장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도로구역 및 소하천구역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위법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처분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함에도 이를 부과한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28

판사 ○○○

판사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28

별지1

목록

1. ○○ ○구 G[4] 답 479㎡

2. 같은 구 H 임야 3,254㎡

3. 같은 구 I 임야 19㎡ 끝.

4) 원고는 2023. 6.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에 'J'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소장 등의 기재에 비추어 이는 'G'의 명백한 오기이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28

별지2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2.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지방세법」 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28

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한다)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28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2. 하천: 「하천법」에 따른 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3. 제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 다만,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제외한다.
4. 구거 :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
5. 유지 : 농업용 및 발전용에 제공하는 댐·저수지·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늪
6. 묘지: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② 법 제10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다만, 전·답·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한다.
2.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시험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임야
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임야

끝.